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호	14
-------------	----

제출년월일 : 1995.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 제안사유

'95. 5. 16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

## □ 주요골자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 삭제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도로, 하천등)의 취득시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 및 결과통보 규정추가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 지정
  - . 기타지역 : 400㎡ ⇒ 700㎡로 확대
  -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
-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 매각시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종전 1급관사에서 1, 2급 관사로 확대

## □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 시. 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 시달 (공기 13330-469호. '95. 7. 3)

## □ 기타 참고자료 : 별첨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분수림의 설정) 영 제10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제1항중 "도지사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 까지"로 하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로 하고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 본문을 삭제하고 제4항 단서중"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중 "취득, 처분, 교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 허가를 하기 위하여"를 "취득, 처분, 교환등을 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39조의2 제1호중 '기타지역에서는 400m'이하의 토지'를 '기타지역에서는 700m'이하의 토지'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할 때.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공유재산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 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기요금(단, 1급. 2급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단, 1급. 2급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2급관사에 한함)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